

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(상품권·선불카드)
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세대원수	전화번호
	주소			전자우편

지급 방법	유형	지역사랑상품권(지류) []	지역사랑상품권(모바일) []	선불카드 []
	지급처	읍면동 주민센터 []		

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신청(선택사항)	전 부	일 부
	[]	[] 원

1. 신청한 긴급재난지원금을 「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긴급재난기부금으로 기탁합니다.

※ 기부하신 긴급재난지원금은 연말정산 등 소득세 신고시 16.5%(지방세 포함)의 세액공제를 향후 10년 이내에는 연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(필수사항)	확 인
<p>1.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사·군구청장이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3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,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, 국민건강보험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을 통해 조회합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 보유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간 보유(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)할 수 있습니다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적격 여부 등 처리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합니다.</p>	[]
<p>2.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위탁받는 자: <u>우리은행, 신한은행, 농협 등(지자체별 지역금융 은행 명시)</u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위탁 목적: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정산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위탁할 개인정보 범위: 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, 주소, 연락처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위탁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·이용 기간: 위탁업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합니다.</p>	[]

유의 사항 (필수사항)	확 인
<p>1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,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(재판매, 현금화 등)에 사용한 경우,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멸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료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,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p>	[]
<p>2.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·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</p>	
<p>3. 상품권·선불카드의 사용기간 및 사용가능한 지역과 업종이 제한되며,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금액은 소멸됩니다.</p>	
<p>4. 신용·체크카드 충전과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.</p>	

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, 위와 같이 긴급재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 귀하

구 비 서 류 | 1.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위 임 장

위임하는 사람	이름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
위임받는 사람	이름 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
	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	전화번호
	주소	

민원내용	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기부 []	상품권·선불카드 수령 []	이의신청 []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

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.

년 월 일

위임하는 사람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을 제시해야 합니다.
-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「형법」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·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